

항공화물 현장검사 방법 및 기준(제34조 관련)

1. 기준

가. 항공화물 컨테이너는 국제항공운송협회(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, IATA)가 정한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에 준하는 화물운송 단위(Unit Load Device, ULD)를 말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 컨테이너에 준하는 화물운송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.

- 1) 비식용 축산물, 한약재, 상온보존 제품, 견본품, 시약제품 등 소량제품으로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상 안전한 것
- 2) 비정형 컨테이너 형태의 포장으로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고 냉장(냉동) 온도유지가 가능한 것

나. 항공화물의 봉인은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 봉인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- 1) 봉인 또는 스티커를 우리나라로부터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, 검역증명서와 현물의 봉인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및 봉인의 서명이 검역증명서 검역관 서명과 일치하는 경우
- 2) 견본품 등 소량제품 또는 시험연구용제품으로 검역관이 포장 상태, 검역증명서 기재 내용과 현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정한 경우

2. 검사방법

가. 항공화물로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역학조사, 현물검사 등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4조 등에 따라 실시한다.

나. 보냉 전용 컨테이너로 수입되는 축산물은 온도계를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, 적정온도 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봉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다. 일반 컨테이너 등으로 수입되는 보냉 축산물은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가 권고하는 온도 유지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등 냉매의 양이 화물 또는 선하증권 등에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현물검사가 필요한 경우 개봉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